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등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682호, 제2201683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개요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682호)	1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683호)	2
II . 검토의견	3
1. 요양급여의 범위에 ‘예방’을 추가(안 제40조제4항제4호)	3
2.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및 적용 제외(안 제122조) ·	7

I. 개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682호)

2024년 7월 12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단·치료·재활 등의 목적으로만 지급이 가능한데, 업무상 재해의 누적·방치로 인한 상병의 악화로 치료·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기능을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에서 ‘예방관리와 악화방지’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12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683호)

2024년 7월 12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해당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7조).

Ⅱ. 검토의견

1. 요양급여의 범위에 ‘예방’을 추가(안 제40조제4항제4호)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산재보험급여 중 요양급여의 내용에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요양급여) ① ~ ③ (생략)	제40조(요양급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4. 재활치료</u>	<u>4. 예방 및 재활치료</u>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산재보험급여 중 요양급여¹⁾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은 진찰 및 검사, 약제,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임.²⁾

한편, 현행법상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지급이 종료된 이후라도 합병증 등 다시 요양을 받을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는데,³⁾ 현재 요양종결 이후 합병증 발병 등이 우려되는 44개 상병군⁴⁾에 대한 예방 진료비 및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한 비용을 지원하

1) 산재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총 8종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음.

2)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4. 재활치료 / 5. 입원 /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⁵⁾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에 추가 상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내용에는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⁶⁾ 요양급여의 내용에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요양 중’ 질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재보험의 보장 범위에 명시하여 산재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에 추가 상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⁷⁾ 요양급여는 부상·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 ‘치유’⁸⁾

4) 외상후 백내장, 중추신경 손상에 따른 중증장애, 뇌손상에 따른 파킨슨 증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CPRS), 진폐증에 따른 후유증상 등에 대하여 합병증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병에 관하여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별표1.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 참조.

5) 2023년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600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액 집행하였음.

6)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 5. 입원 / 6. 간호 / 7. 이송(移送)

7)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8)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에 이르면 그 지급이 중지된다는 점⁹⁾을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의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것이어서 재해근로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추가적인 상병의 발병을 억제하는 소위 ‘예방적 치료’는 요양급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①요양급여는 제도의 본질상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련 상해 또는 질병의 수술·재활치료 등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예방급여(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등을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 ②예방에 관하여는 재요양방지를 위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사업을 별도로 운영 중에 있고, 작업환경측정, 근로자건강진단, 근로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과 관련된 예방 사업도 산재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이미 운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기획재정부는 요양급여는 제도의 본질상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상해 또는 질병의 수술·재활치료 등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예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상 예방급여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포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임.

9)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2.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및 적용 제외(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제12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7조)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하
되, 파견지 국가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제122조제1항, 제3항), 산재보험 가입
자(사업주)가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
고하도록 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제122조제2항), 관련 절차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임(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제122조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7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 -----

현행	개정안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은----- -----적용한다. ② 제1항의 보험가입자가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받

현행	개정안
<u><신설></u>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1조¹⁰⁾에 따른 보험사업에 가입한 경우 2. 파견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외파견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⑤·⑥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⑦ 해외파견자의----- ----- -----법 적용 제외·재적용의----- -----그----- -----

현행	개정안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2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의 산재보 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보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 재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 해율 및 재해보상에 필요한 금 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재보험 가입자의 해외파 견자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제 122조에----- ----- ----- ----- ----- ----- ----- ----- ----- ----- ----- ----- ----- ----- ----- ----- -----. ②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적 용 제외·재적용의----- ----- ----- ----- -----. <삭 제>

현행	개정안
협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제5항·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해외파견자’는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으로,¹¹⁾ 고용노동부는 실무상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¹²⁾ 개념에 입각하여 ①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에서

- 10)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제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업 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82조제1항과 제5장 및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영위할 때 이 법에 따른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11)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근무하고 임금을 국내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하는 사람으로써 ②지휘·명령의 주체가 해외 사용자인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로 보고 있음.¹³⁾

현행법상 해외파견자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되, 예외적으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외국의 사회보장체계에 따라 산재보험의 부담과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복가입이 우려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23년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해외파견자의 수는 14,286명이고, 산재급여 수급자 수는 127명이며, 산재급여 집행액은 41억 4,2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산재보험 적용 해외파견자 수	15,539	14,497	14,138	14,269	14,286
산업재해 승인자 수	33	21	30	29	22
산재보험급여 수급자수(A)	131	120	140	145	127
산재보험급여 집행액(B)	3,520	4,584	4,683	5,181	4,142
1인당 급여액(B/A)	27	38	33	36	3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용노동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자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 고용노동부 지침 시달사항(2018. 8. 14.),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지침”

현재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임의가입 방식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사전에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가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보상이 불가능하고, 사업주로서는 해외파견자를 신고하면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유인이 크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은 임의가입 방식에서는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보임.

국가인권위원회도 2014년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의 산재보험의 보장수준이 국내에 비해 낮을 여지가 있다는 점,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면서 해외파견자가 현지 국가의 산재보험이나 이에 준하는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없어 사업주가 아무런 재해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보다 불이익하지 않은 내용의 민간보험에 가입하거나 현지의 법·제도를 통해 국내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¹⁴⁾

14) 국가인권위원회(2014),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개정안은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를 폐지하고 이들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을 통해 산업재해로부터 해외파견자를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산재보험보다 불이익하지 않은 내용의 민간보험에 가입하거나¹⁵⁾ 파견대상국의 법령에 따라 파견기간 중 재해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제외 규정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것임.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곤란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외파견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어렵거나 해외파견자에 대한 구제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¹⁶⁾

고용노동부는 ①우리나라의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예방의무 이행이나 법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산재보험 당연가입 및 국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해외파견의 특성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 ②ILO 협약¹⁷⁾에서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속지주의를

15)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업 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이에 대해 제21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박대수의 원안, 제2110534호) 검토보고서에서는 해외 재해조사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 해외 재해조사 전담 조직 마련 등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원칙으로 한다는 점, ③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시 보험 재정 악화, 업무관련성 파악 곤란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점¹⁸⁾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기획재정부는 해외파견 특성상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예방의무 이행이나 법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산재보험 당연가입 및 국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보험행정에 있어서도 해외발생 재해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파악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0

17) ILO협약 제19호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개인적 상해를 입은 이 협약을 비준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 또는 해당 근로자의 피부양자에게 자국민에게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근로자보상 관련 처우를 허용할 것을 약속한다.

18)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관계 신고·보험료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해발생시 보상해야 함에 따라 보험재정 악화 우려,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사고, 질병)의 경우 업무관련성 등을 파악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